

1.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

2. 제제대상사실

「여수신업무방법기준」 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. 다만, 50백만원 이하의 주택관련자금대출(생활안정자금대출 20백만원 포함) 등은 취급할 수 있음에도

2003.7.31~2007.11.8. 기간 중 ☆☆ ●●●에게 4건, 100백만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임직원 대출한도를 50백만원 초과하였음

3. 제제조치내용

제제대상	제제내용
직 원	견책 : 2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4조
2. 「여수신업무방법기준」 제14조